##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성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88

발의연월일: 2024. 6. 12.

발 의 자: 김성원・이인선・안철수

박충권 • 구자근 • 김선교

김위상 · 정희용 · 김종양

최수진 · 김태호 의원
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.72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저출산 문제는 주거와 일자리, 육아와 교육 등 출산부터 육아까지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하는 국가적 과제임.

그런데 인구정책 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의 소관 업무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고, 실질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의 수립·총괄·조정, 인구구조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여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인구정책에 관한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6조 및 제46조).

법률 제 호

##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1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0. 저출생대응기획부

제4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6조(저출생대응기획부) 저출생대응기획부장관은 저출산·고령사회 정책의 수립·총괄·조정, 인구구조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 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조직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제46조의 개정규정
  - 에 따른 사무는 저출생대응기획부장관이 승계한다.
  - ②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.
  -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에 따라 저출생대응기획부장관이 승계하

는 사무와 관련된 보건복지부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령으로 본다.

- 제3조(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·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 조치) 부칙 제2조1항에 따라 저출생대응기획부장관이 승계하는 사무 와 관련하여 이 법 시행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률에 따라 행한 고시·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신청· 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저출생대응기획부장 관의 행위 또는 저출생대응기획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.
- 제4조(인사청문에 관한 특례) 이 법 시행 전에 대통령은 국무위원 후 보자(저출생대응기획부장관)에 대하여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.
- 제5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(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)에서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저출생대응기획부장관이 승계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, 보건복지부장관,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또는 보건복지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저출생대응기획부, 저출생대응기획부 경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6조(행정각부) ① 대통령의 통	제26조(행정각부) ①		
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			
다.			
1. ~ 19. (생 략)	1. ~ 19. (현행과 같음)		
<신 설>	20. 저출생대응기획부		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		
<신 설>	제46조(저출생대응기획부) 저출생		
	대응기획부장관은 저출산・고		
	령사회정책의 수립・총괄・조		
	정, 인구구조변화 대응에 관한		
	사무를 관장한다.		